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519
----------	------

제출연월일: 2020. 11. .
제 출 자: 성동구청장

1. 제안이유

둘째아이 이상부터 지원하는 출산장려금을 첫째아이까지 확대하고 둘째아이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완화 및 건강한 아동양육을 지원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출산장려금 지급 규정 정비(안 제4조)

- 첫째아이: 20만원 지원 규정을 신설
- 둘째아이: 기존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확대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: 「저출산·고령사회 기본법」

나. 예산조치: 비용추계서, 별첨

다. 기 타

- 1) 입법예고(2020. 10. 14. ~ 11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- 2) 규제심사 결과, 신설·강화 규제 없음
- 3) 부패영향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4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- 5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
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중 “둘째아이 20만원”을 “첫째아이 20만원, 둘째아이 40만원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제4조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4조(지원기준) 출산장려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<u>둘째아이</u> <u>20만원</u> , 셋째아이 100만원, 넷 째아이 이상 150만원을 지원하 며 쌍생아 이상일 경우에는 출 생아 별로 지원한다.	제4조(지원기준) ----- ----- <u>첫째아이 20만원</u> , <u>둘째아이 40만원</u> ----- ----- ----- -----

서울특별시 성동구 출산장려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

I. 비용추계 요약

1. 비용발생 요인: 첫째아이 장려금 지원 신설 및 둘째아 상향 지원에 따른 비용
2. 비용추계의 전제: 관내 모든 가정에 출산장려 및 출산을 축하하기 위한 장려금 지원

3. 비용추계의 결과: 성동구 출생아감소율 5%적용

[1차연도를 기준으로 5년평균(2015~2019년)감소율 적용]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사회보장적수혜금	628,400	596,980	596,980	596,980	596,980	3,016,320
총 비용	628,400	596,980	596,980	596,980	596,980	3,016,320

4. 재원조달 방안

(단위: 천원)

구분 \ 연도	1차년도	2차년도	3차년도	4차년도	5차년도	합 계
사회보장적수혜금	628,400	596,980	596,980	596,980	596,980	3,016,320
총 비용	628,400	596,980	596,980	596,980	596,980	3,016,320

5. 작성자: 여성가족과 행정7급 이승미(02-2286-5435)

II. 비용추계 상세내역

- 출생순위별 축하금 지원비

- 첫째아 200천원 × 1,278명 = 255,600천원
- 둘째아 400천원 × 677명 = 270,800천원
- 셋째아 1,000천원 × 90명 = 90,000천원
- 넷째아 1,500천원 × 8명 = 12,000천원

< 관 계 법 규 >

□ 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

제10조(경제적 부담의 경감)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. <개정 2012. 5. 23.>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·출산·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 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. <신설 2012. 5. 23.>